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36475 판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 등기말소]

재판경과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364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2 선고 2002나757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 11. 7 선고 99가합88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밀양박씨 참의공파종중(密陽朴氏 參議公派宗中)

대표자 박♣수, 박@일, 박▼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오

피고, 상고인 밀양박씨 참의공파종중(密陽朴氏 參議公派宗中)

대표자 박▲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이▽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6.2. 선고 2002나75782판결

판결선고 2004.1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 다음, 원고 종중의 목적,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인 정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 종중이 밀양박씨 참의공파종중사단이란 일반관습에 어긋나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그 정관의 내용에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종원의 자격상실조항과 종중의 해산조항이 포함되어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종중의 성립에 관한 법령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박♣수, 박@일, 박▼수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01.7.28.자 임시총회결의는 사원명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박×열 등 30인에 대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나, 그 후 원고 종중의 사원명부와 밀양박씨 파보, 밀양박씨 세보 등에 따라 구성원인 종원의 범위를 정하고, 위 임시총회에서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던 박×열 등 30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총 109인의 종원을 확정하 후 그 중 소재가 확인된 97인에게 개별적으로 총회소집통지를 하여 87인이 참석하여 박♣수, 박@일, 박▼수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02.3.9.자 임시총회결의는 유효하고, 따라서 그들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한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원고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의 흠결은 모두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중의 대표권에 관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60903 판결 참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가 된 경우에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39167 판결, 2005.5.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진정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고, 토지의 분필절차를 밟아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오랜 기간 동안에 관리인을 통하여 그 토지에 설치된 조상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토지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왔으며,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밀양박씨 참의공파종중의 소재지가 원고 종중의 소재지와 일치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피고 종중이 정당한 권리 없이 1998.10.17. 등기명의인인 원고 종중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 종중을 표상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종중은 원고 종중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종중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김용담